



# 약정사항

1. 감정평가의 물건(권리)중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사변이나 당 사무소의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 의뢰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감정평가 보수를 납입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감정평가 의뢰물건의 추정가액을 기준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50% 상당액을 감정평가 착수금(최저액은 100,000원임)으로 감정평가 접수 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 사무소가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소요추정 출장여비를 착수금에 포함합니다. 착수금은 최종 청구보수에서 차감처리 됩니다.
4. 감정평가의 보수는 당 사무소의 감정평가원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5.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 시 납입한 감정평가 착수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불능 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담보 감정평가인 경우 확인 금융기관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7항에 준합니다.
7. 감정평가 의뢰 후 당 사무소의 현장조사 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제 2항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 착수금의 50%를 당 사무소에 귀속하며 현장조사 후에는 감정평가 착수금을 일체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 후에는 소정의 감정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법령의 규정이나 당 사무소와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제6항 단서, 제 7항 및 제10항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 시 납입하지 아니한 착수금은 동 항에 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9. 당 사무소의 승낙없이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 목적에 기재된 제출회사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당 사무소에서는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감정평가 의뢰물건의 소유자(권리자)와 감정평가 의뢰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를 득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 없는 감정평가 의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자(권리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당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 감정에 관한 소송은 당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2. 당 사무소와 감정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 내용이 위 약정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